

전남대학교 장학 지침

제정 2014. 1. 22.	개정 2014. 3. 4.	개정 2014. 6. 20.	개정 2015. 7. 20.
개정 2015. 7. 20.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1. 9.
개정 2018. 12. 24.	개정 2019. 7. 23.	개정 2019. 8. 20.	개정 2019. 11. 19.
개정 2020. 1. 16.	개정 2020. 4. 24.	개정 2020. 7. 27.	개정 2021. 1. 6.
개정 2021. 7. 26.	개정 2022. 2. 10.	개정 2022. 6. 15.	개정 2022. 8.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장학 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그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교내장학금은 대학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교외장학금은 국가·지방보조금, 발전기금재단 등 대학회계 이외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금은 그 지급 목적에 따라 국가장학금, 감면장학금, 생활지원형 장학금,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교외 장학금, 단과대학·부속기관의 자체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다음의 각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다.

가. 국가장학금

나. 감면장학금(별표 1, 5 장학금)

2. 다음의 각 장학금은 생활비의 지원, 근로에 대한 대가의 보상 또는 기타 1회성의 포상 내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생활지원형 장학금(열정, 동행, 도전, 수능성적우수, **학생회 임원** 등 별표2 장학금)

나.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다. 교외장학금(다만, 장학금 지급 기관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 단과대학·부속기관의 자체 장학금

마.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정한 기준을 따른다.

1.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단, 대학원은 제외)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자
- 자기주도적으로 꿈과 희망을 계획하여 실현하는 자
- 등록금 법정 감면대상자 중 적격자
- 체육특기자 중 경기성적이 우량한 자
- 교류 학생으로 선발된 자
- 농어촌 고교 출신 입학자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등록금 초과 지급 제한) ①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생활비의 지원, 근로에 대한 대가의 보상 또는 기타 1회성의 포상 내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관리) ① 학생처와 대학원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관한다.

② 학생이 요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장 학부 장학금

제1절 감면장학금

제6조(장학금 재원) ① 징수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장학금으로 배정한다.

1. 수업료1은 징수액의 30%를 장학금으로 배정한다.

2. 수업료2는 징수액의 10%를 장학금으로 배정한다.

② 장학금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구분하여 배정한다.(2007. 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제7조(장학생 선발 원칙) ① 장학생 선발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학생은 선발 내역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② 신입생은 우선 선발 장학생을 제외한 인원에서 모집 단위별 최종합격 인원내 비례하여 선발한다.

③ 우선 선발 장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보다 먼저 선발한다.

④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30%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선발한다.

⑤ 재학생은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

⑥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적극 선발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제외) ①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이 휴학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날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②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③ 복학 및 재입학자는 당해학기에 감면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단,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과 창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우선 선발 장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2.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의 자녀
3. 아동복지 시설 생활자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5. 국가장학생 I 유형에 선발된 학생
6. 영·호남 교류 학생
7.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자
8. 체육 특기자
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10. 가족 장학금 지급 대상자

제10조 (장학예산 배정원칙) ①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원), 직할학부에 배정한다.

② 각 단과대학은 배정된 장학 재원을 학과·학년별 인원을 고려하여 학과(부)에 재배정한다.

제11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절 생활지원형 장학금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생활지원형 장학금의 종류는 열정, 동행, 도전, 수능성적우수 및 학생회 임원 장학금 등이 있으며 별표 2와 같다.

제3절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제13조(장학금 종류) 발전기금재단 장학금의 종류는 용봉, 대신, 동원, 생협 및 기타 지정·미지정 장학금 등이 있으며 별표 3과 같다.

제4절 교외 장학금

제14조(장학생 선발 기준) ①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기부자가 지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② 기관, 단체, 개인, 회사 등 장학생 추천 의뢰자가 자격요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남대학교 장학규정과 장학지침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한다.

③ 교외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도 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장학규정 제14조를 적용한다.

제15조(장학생 배정 기준) ① 장학생 추천 의뢰자가 자격 요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학생 수 300명당 장학생 1명(횟수)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단과대학별 장학금 수혜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장학생이 다수 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 받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 수만큼 배정 횟수에 포함한다.

③ 장학금 기부자가 자격 요건을 지정한 장학금을 배정한 때에는 장학금 배정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휴학, 성적미달, 징계 등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기 배정 단과대학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단과대학·부속기관 자체 장학금

제16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 방법) ① 단과대학·부속기관 자체 장학금은 단과대학 발전기금, 학술연구 기금 또는 동창회 장학기금 등 단과대학과 부속기관이 출연 받는 일체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단과대학과 부속기관의 장은 자체 장학금을 등록금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의 출연 기관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원 장학금

제1절 감면장학금

제17조(장학금 재원) ① 징수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장학금으로 배정한다.

1. 각 대학원에는 수업료1 징수액의 30%를 감면장학금으로 배정한다.
2. 대학원별 수업료2 징수액의 감면장학금 배정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 ② 도전(미래) 장학금은 제1항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생 선발 원칙) ① 장학생 선발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학생은 선발 내역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② 직장을 갖지 아니한 전일제 학생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반대학원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비전일제 학생은 지도(예정)교수[부재 시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③ 재학생은 각 대학원 모집 단위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

④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30%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한다.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적극 선발한다.

제19조(지급 중지 및 제외) ①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이 휴학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날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②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③ 복학 및 재입학자는 당해학기에 감면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④ 수업연한 초과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도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20조(우선 선발 장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2.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입학자(법학전문대학원)

3. 교원특별연수 입학자

4. 가족장학금 지급대상자

5. GTU 장학에 선발된 자

6. PFF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7. NGO협동과정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 총장명예장학(CNU GS-PHF)에 선발된 자

제21조(장학 예산 배정원칙) 우선 선발 장학금을 먼저 배정한 후, 잔여 예산을 각 대학원 모집단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22조(장학금의 종류) 감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2절 생활지원형 장학금

제23조(교육·연구 조교 장학금) ① 대학원별 수업료2 징수액의 생활지원형 장학금 배정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대학원생 중 교육·연구 조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선발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장학지침 중 폐지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부 칙(2014. 1. 22.)

이 지침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장학지침 중 폐지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부 칙(2014. 3. 4.)

이 지침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6. 20.)

이 지침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7. 20.)

이 지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12.24.)

이 지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 9.)

이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8. 1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7.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8.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육특기자장학금,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은 '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 11.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4.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7.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7.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2.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6.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8.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 감면장학금의 종류

구분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
우수장학금	진리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입학 성적 우수자 -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진리장학1: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수업료2 ½ 진리장학4:수업료1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대상자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 신입생: 위 대상자 - 재학생: 위 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등록금 전액
	북한 이탈 주민 및 그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 - 신입생 및 재학생: 위 대상자 - 지원 대상 및 기간: 만 35세 이하인 자로 대학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를 지원하되,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지원	등록금 전액
복지장학금	창조 장학금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이고, 12학점 이수한 자로서(단,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성적 반영기준 충족자는 예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한 저소득층 중에서 선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아동복지 청소년 장학금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신입생: 위 해당자 - 재학생: 위 해당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등록금 전액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형 합격자(입학학기만 적용) 중에서 선발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회수	등록금 전액

구분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
	장애학생 장학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 재학생: 위 해당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수업료2 전액
	농어촌학생 전형 장학금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신입생: 위 해당자(입학 학기만 적용)	수업료1
특별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광주캠퍼스) :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이거나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서 경기 성적이 3위 이내로 체육교육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 ※ 2017년도부터 폐지	등록금 전액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	▷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위 해당자로서 평균평점 2.5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가족 장학금	▷ 형제, 자매,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제외)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수업료2 전액

<별표 2> 학부 생활지원형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명	수혜자격
열정장학금	▷ 학교 기관에서 봉사하는 학부 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기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
동행장학금	▷ 학업장려: 소득 6분위 이하의 2~3학년 학부 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 전체 평균평점이 4.31이상인 자는 전(前)학기 성적이 전전(前前)학기 성적보다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전체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는 전(前)학기 성적이 전전(前前)학기 성적보다 0.2점 이상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전체 평균평점이 3.5미만인 자는 전(前)학기 성적이 전전(前前)학기 성적보다 0.5점 이상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취업지원: 직전 학기 성적 1.75이상인 자로서 소득 5분위 이하의 4학년 학부 재학생 - 구체적인 취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선발 ▷ 희망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파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학업 진행이 어렵게 된 학부 재학생 중에서 선발 - 소득 6분위 이하의 재학생으로 학사경고 2회 자 중 대상으로 선발되어 다음 학기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 향상된 자

장학금명	수혜자격
도전장학금	▷ 비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로서 공인외국 어능력시험의 성적, 자기계발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도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1.75이상인 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 자율: 교육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자주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 미래: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성실하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모집 단위별 최초 합격자로 선발 - 인문계열: 4개 과목(국어·영어·사탐 2과목) 합이 6등급 이내 - 자연계열: 수학(선택과목은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과 과탐 2과목 이 각각 2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약학대학 및 추가합격자 제외 ▷ 계속지원 조건: 입학하여 첫 학기 이수한 이후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5이상이고,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단,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학생회 임원 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 총학생회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총학생회 국·실장급 임원 ※ 단,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미 구성 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지급 가능

※ 세부사항(선발절차 및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각 장학의 운영 계획서에 따른다.

<별표 3> 발전기금재단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
용봉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발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실점 78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생활지원형 장학금으로 대체)	재단에서 정한 금액
대신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5(실점 87.5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재단에서 정한 금액
동원장학금	▷ 성실하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자로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5(실점 87.5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재단에서 정한 금액
생협장학금	▷ 전남대학교 학생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근로 희망자 가운데 선발 ※ 세부사항(선발 절차 및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생협에서 정한 금액
기타 지정·미지정 장학금	▷ 발전기금 기부자의 장학금 지급 요건에 적합한 학생으로 선발 ※ 단, 장학금 지급 요건이 없는 경우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재단에서 정한 금액

※ 발전기금재단 장학금을 생활지원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4〉 대학원별 감면장학금 배정 비율

구분	배정 비율
특수대학원	수업료2의 3%
전문대학원	수업료2의 7%
법학전문대학원	수업료2의 19%

〈별표 5〉 대학원 감면장학금의 종류

구분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
우수장학금	진리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입학전형성적 순위) -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84.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일반대학원생은 진리장학 D만 지급한다.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하여 진리장학 A-B-C도 지급할 수 있음	진리장학A: 등록금 전액 진리장학B: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C: 수업료2 ½ 진리장학D: 수업료1
	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입학전형성적 순위) -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진리장학A(치전원): 등록금 전액 진리장학B(치전원):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C(치전원): 수업료2 ½ 진리장학D(치전원): 수업료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입학전형성적 순위) -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7(실점 83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법전원1:등록금 전액 법전원2:수업료2 전액 법전원3:수업료2 70% 법전원4:수업료2 50% 법전원5:수업료2 20% 법전원6:수업료1
복지장학금	창조장학금	▷ 저소득층(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전남대학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반드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제출	창조장학1: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수업료2 ½ 창조장학4:수업료1
	창조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이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소득 구간 판정 결과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의함」가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발 -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20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창조장학1(법전원):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법전원):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법전원): 수업료2 80% 창조장학4(법전원): 수업료2 50% 창조장학5(법전원): 수업료2 30% 창조장학6(법전원): 수업료1
우선 선발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3개 학기 범위 내). 단, 입학 후 휴학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함 -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0(실점 84.5점) 이상인 자로 선발	수업료1

구분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입학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입학 후 휴학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함 - 신입생: 위 해당자 - 재학생: 12학점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평점평균 2.2이상 취득한 자	등록금 전액
	교원특별연수자 장학금 (사범대학)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원특별연수 대상자로 3개 학기 동안 수업료 감면 * 입학 첫 학기에는 선발하지 않음	수업료1
	가족 장학금	▷ 형제, 자매,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제외)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0(실점 84.5)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수업료2 전액
	GTU 장학 (사범대학)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 석사 공동교육과정 2년차 학생해외 대학 수학	수업료2 전액
	PFF프로그램 장학금	▷ PFF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는 대학원 전 과정 등록금 전액 감면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 가능 - 신입생: PFF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재학생: PFF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 4.0이상 취득하여야 함	등록금 전액
	NGO협동과정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원 장학금	▷ 일반대학원 NGO협동과정 특별전형 입학자 중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범위 내에서 등록금전액 감면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 - 신입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지원 장학생 선발된 자 - 재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지원 장학생 선발된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취득한 자 - 지원 제한 사항 : 참가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중도탈락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지원 제한 ① 지원금 반환조치: 과정 이수를 못한 채 중도 탈락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토록 함 ② 탈락자 소속단체 제한: 차년도 활동가 추천에 제한을 둠	등록금 전액
	총장명예장학 (CNU GS-PHF)	▷ 총장명예장학(CNU GS-PHF)에 선발된 자 - 신입생: 학부 평균평점 4.0이상 취득한 자로서 학과 기준을 충족한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 - 재학생: 총장명예장학에 선발된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 4.0(만점 4.5) 이상 취득하고, 학과 유지 기준을 충족한 자	등록금 전액

<별표 6> 대학원별 생활지원형 장학금 배정 비율

구분	배정 비율	장학 내용
일반대학원	수업료2의 11%	교육·연구 조교(TA·RA) 장학금
특수대학원	수업료2의 7%	교육조교(TA) 장학금
전문대학원	수업료2의 3%	교육조교(TA) 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수업료2의 1%	교육조교(TA) 장학금